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14일,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의겸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감치를 위한 구속집행자 및 유치장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및 해당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감치 등) ① (생 략)	제61조(감치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 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u>경찰</u> <u>공무원</u> 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 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 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 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 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u>중대범죄수</u> <u>사청수사관 · 경찰공무원</u> ----- _____ _____ -----.
③ 감치는 <u>경찰서유치장</u> , 교도 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 으로써 집행한다.	③ ----- <u>경찰서 등 수사기관의</u> <u>유치장</u> 이나 _____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